

검 토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.

2005년 6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,

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,

「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○ 동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
- 학교운영위원의 보궐선출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은,

- 운영위원의 자격상실에 따른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하고(안 제3조),
- 위원이 궐원되었을 경우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때에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(안 제3조)

○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,

- 금번 제출된 「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은

- 주로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상실로 궐원이 발생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의 보궐선출기한이 현행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, 신입생 학부모의 운영위원 배제 및 홍보상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고,
- 위원 결원시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는 잔여임기가 현행 3개월로 되어 있어 짧은 임기로 인해 보궐선출 입후보를 꺼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궐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잔여임기를 6월 미만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운영위원 결원시에는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8조 및 각급 학교의 「학교운영위원회규정」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기준에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,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「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